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일시** 2024. 8. 23. (금) 13:00~18:00

**장소** 대한출판문화회관 세미나실

**주최**



**한국중견기업학회**  
Korean Academ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후원**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edium Market Enterprises of Korea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일시** 2024. 8. 23. (금) 13:00~18:00

**장소** 대한출판문화회관 세미나실

#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주최:  한국중견기업학회

후원: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회: **곽관훈** (수석부회장, 신문대)

### 프로그램

13:00~13:10	등록
13:00~13:30	개회사 - 권종호 회장(한국중견기업학회, 건국대) 환영사 - 이호준 상근부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초 발제 13:30~14:00	상법상 충실의무 도입논의와 중견기업 - 권종호 회장(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1주제 14:00~14:50	<b>50분</b> <b>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대한 소고</b> 사회: 조병선 원장 ((사)한국가족기업연구원) 발표: 김성태 교수(충실대학교) 토론: 정주호 겸임교수(한양대), 김대홍 교수(충실대)
2주제 14:50~15:40	<b>50분</b> <b>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에 관한 판례동향</b> 사회: 표정호 석좌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표: 정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데이터로 대표변호사) 토론: 권용수 교수(건국대), 오석진 박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15:40~16:00	Break Time
3주제 16:00~16:50	<b>50분</b> <b>중견기업과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b> 사회: 정준우 교수(인하대) 발표: 박준영 교수(경상대) 토론: 최은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박정서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4주제 16:00~17:40	<b>50분</b> <b>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세</b> 사회: 윤현석 교수(원광대) 발표: 황헌순 교수(계명대) 토론: 김대웅 세무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수천 회계사(바움세무회계)
17:40~	폐회



한국중견기업학회

Korean Academ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 목 차

기조발제..... (1)

**권종호 회장**(한국중견기업학회, 건국대 법전문)

제1주제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대한 소고** ..... (11)

발표 : **김성태 교수**(송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제2주제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에 관한 판례동향** .....(27)

발표: **정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제3주제

**중견기업과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45)

발표: **박준영 교수** (경상대 법학과)

제4주제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세**.....(61)

발표: **황헌순 교수** (계명대 세무학과)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기조발제

### 상법상 충실의무 도입논의와 중견기업

권종호 교수 (건국대학교)

# 상법상 충실의무 도입논의와 중견기업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

- **[정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 추진→지배주주 이익 대비 일반주주이익 침해 방지가 목적
- **[국회]** 22대 국회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
  - \* [民]정준호 의원안('24.6.5)→21대 [民]이용우 의원안('22.3월)과 동일
  - \* [民]박주민 의원안('24.6.13)→21대 [民]박주민 의원안('23.1월)과 동일

2

## 상법개정안(의안번호 144) 제안이유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 ----- <u>주주의 비례적 이익과</u> 회사를-----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여 경영과정에서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함
- 박주민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

3

## 충실의무도입을 둘러싼 논쟁

### • 찬성론

- 자본거래를 통한 일반주주 이익의 편취 방지(예: 제3자배정 신주발행)
- 손익거래의 경우 자산운용과 이행상충의 판단기준이 왜곡되는 문제 해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에 있어서 전체 주주와 이해상충 거래의 방지(지배주주의 지배주식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 처분)
-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 등 형식적 기준 충족만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문제해결(합병비율요건)

### • 반대론

-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 혹은 총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현행의 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음
- 소수주주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다수결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 모든 주주는 회사의 자산과 권리를 직접 향유하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이익을 누리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 지배주주와 회사에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자본거래란 있을 수 없음.
- 충실의무 대상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주주로 국한할 경우, 회사채권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이익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동시에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의 충돌문제

4

#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시 우려사항

- ❖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회사소송의 증대
- ❖ 합병, 분할합병, 주식이전·주식교환 등 사업재편거래에 있어서 합병 비율 등에 관한 공정성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의 증대
- ❖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이나 자사주의 처분 등 지분가치 희석화를 수반하는 거래에 있어서 분쟁 가능성의 증대
- ❖ 주식공개매수 등 경영권 매각거래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둘러싼 분쟁의 증가
- ❖ 사업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기업가 정신 위축
- ❖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
  -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내리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모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
  -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실현 효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5

# 개정 필요성

- **현행 선관의무 하에서는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 이사는 회사와 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382조 2항) 회사에 대해 수임자로서 선관의무를 부담(민 681조).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선을 다해야 함
- 회사의 이익은 영리성의 원칙에 따라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의미하고, 주주는 총주주를 뜻함. 그러므로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이 아닌, 예를 들어 지배주주나 특정의 개인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반대로 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선관의무에 반하는 것(임무해태)으로서 회사(399조),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401조).
- 이와 같이 현행 선관의무 하에서도 지배주주의 이익만 도모하고 개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무의미. 굳이 입법적 의미를 찾자면 기존의 법리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유력한 반대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6

## 개정의 필요성

- ❖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충실의무를 선관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통설(동질설)에 의하면, 선관의무의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이사의 선관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상법 382조 2항과 충돌.
- 이사의 선관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면 이사는 회사 자체의 이익만 고려해야 하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선관의무 위반. 하지만 주주의 이익 고려가 선관의무 위반이라는 해석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더러 회사의 영리성(169조)과도 충돌하므로 선관의무의 대상은 회사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요컨대,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선관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선관의무의 대상에는 주주도 포함된다고 하는 해석론에 의하면 입법 그 자체가 불필요

7

##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구분 필요성

- 회사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구분하는 것은 회사를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인격체, 즉 법인으로 보기 때문. 그런데 이 법인성은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한 수단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할 때에는 부인되기도 함(법인격부인의 법리).
- 이사의 선관의무의 대상에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선관의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 1인 회사에서 이사 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와 회사를 별개의 인격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 따라서 선관의무의 대상은 회사라고 할 때 이때의 회사는 전체로서의 주주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 타당. 즉 회사와 주주를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은 아님. 만일 전체 주주나 개별 주주나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선관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법인성에 대한 과도한 관념화이고 나아가서는 주주의 이익의 최대화 원칙의 이론적 토대인 회사의 영리성(169조)과도 모순. 그러므로 이사가 지배주주나 특정 소수주주의 이익을 배려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선관의무 (혹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서 금지되지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특정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관의무 (혹은 주주평등원칙)와 상충하는 것이고, 총주주의 이익을 뜻하는 것이라면 선관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결론적으로 입법은 불필요

8

# 입법방식의 타당성

- **주주의 이익을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382조의3)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의 타당성**
- 이사의 충실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해 통설은 선관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동질설).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는 곧 선관의무 대상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므로 개정안은 이사의 선관의무 대상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포함됨을 의미. 그런데 이사의 선관의무는 그 대상을 회사로 국한하고 있으므로(382조 2항) 개정안은 선관의무에 관한 382조 2항과 충돌하게 됨. 따라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이사의 의무로 도입하려고 하면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382조의3)의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관의무에 관한 규정(382조 2항)의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 적용**과의 관계에서도 유리. 경영판단원칙은 충실의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에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는 판례(2011다57869)가 있음). 그러므로 충실의무에 관한 382조의3에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두게 되면 예를 들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사가 행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한 때, 즉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9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정당한 업무집행방해 및 이사와 지배주주간 이해충돌 우려

-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게 되면 이사는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의식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진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반해, 그것을 원하는 지배주주라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를 추진하려 할 것임

## 지배주주 규제의 실효성 미흡

- 이 경우 지배주주에 대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집행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명확해야 하는 등(401조의2 1항 1호 참조) 요건이 까다로우 쉽지 않음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개입된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으면서 이사의 책임만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지배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임

10



## 개정안에 관한 우려에 대한 대안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의  
급증과 경영권에 대한 위협의  
우려에 대해 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의 명문화**와 **배임죄 제도의  
개선**을 제시

다만 **경영권 방어법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음

11

##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

- 경영판단의 원칙의 법제화가 경영판단의 내용에 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미국식의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법심사 기준으로서 확립된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입법화인지 불분명. 후자라고 하면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라는 의미는 없고, 단지 판례법상의 원칙을 실정법상의 제도로 수용하는 의미밖에 없음
- 미국식이 경영판단 원칙을 법제화한다고 하면 경영판단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사에 대한 규율이 사실상 손해배상책임 법리 중심이고 미국과 같은 시장기능(적대적 M&A, 자본시장, 제품시장, 노동시장 등)이나 국외자(사외이사 등)에 의한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그 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미국식의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 원칙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아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것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12

# 한국과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의 차이

•(미국) 경영판단원칙은 원래 19세기 미국에서 판례법에 의해 생성된 법리. 법관은 경영에 대해 비전문가라는 점과 경영판단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의 당부에 관해 사후적으로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리. 따라서 경영판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그 과정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 결과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경영판단을 한 경우 ① 판단사항에 관해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없고, ② 판단과정에 불합리나 부주의가 없으며, ③ 판단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면 법원은 판단'내용'에 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해 주의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심사 기준의 하나. 즉 이사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① 경영판단의 절차에 부주의가 없고 ② 경영판단의 내용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으면 그 경영판단으로 인해 설명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라도 그 판단을 한 이사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따라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양국의 차이) 이처럼 잘못된 경영판단에 관해 이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① 경영판단의 과정에서 적정성만 인정되면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②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① 및 ②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이사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경영판단의 과정만 그 대상이고 내용은 배제됨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영판단의 과정과 내용 모두가 사법심사의 대상임을 뜻함. 그리하여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은 경영판단에 대해 사법심사를 배제하기 위한 법리로 이해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관해 주의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심사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음

13

# 배임죄 제도의 개선

- 이사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622조)가 아니라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형 365조)로 처벌하기 때문. 그 이유는 이래야만 불법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상의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특경법 3조 1항).
- 그런데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할 경우 문제는 일반인의 임무위배행위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나 법리 구성이 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경영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벌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점임
- 형법상의 원칙 중에는 보충성 원칙이 있는 바, 형법 이외의 다른 통제수단으로는 법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형법의 적용이 정당화된다는 원칙. 이러한 보충성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사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쉽게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잘못에 비해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이고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이나 형법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에도 반하게 됨.
- 그런 점에서 이사를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 여부와 관계 없이 지양될 필요가 있음

14

# 경영권 방어 법제의 도입

충실의무 대상의 확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주주권 강화, 경영자의 책임 의식 제고, 시장기능에 의한 규율 강화, 국외자(사외이사) 역할 확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기업으로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지배구조개선 = 경영권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지배구조개선에 기업의 소극성과 반발은 피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구조개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도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15

## 참고문헌

- 이철송,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평가, 상장협연구 2023-3
- 홍복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논쟁 (한국경제법학회 하계학술행사 자료집, 2024. 7. 12.)
- 권재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책임제도 개선방안(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 세미나 자료집, 2024. 6. 26.)
- 최준선: 이사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가 있는가?, 기업법연구 제38권 제1호
-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41권 제2호
- 손창완, 상법개정의 현황과 평가, 상사법연구 제43권 제1호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 (2024. 6. 25.)

16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제 1 주제

###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대한 소고

김성태 교수 (송실대학교)

#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대한 소고\*

김 성 태\*\*

## - 목 차 -

- I. 서론
- II. 「중견기업법」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
  - 2.1 중견기업의 현황
  - 2.2 「중견기업법」에 대한 입법 논의
  - 2.3 「산업발전법」에서의 중견기업에 대한 논의 검토
  - 2.4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한시법
- III.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와 개선 방안
  - 3.1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의 의의
  - 3.2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의 제정 검토
  - 3.3 특별법에서 진흥법으로의 제정 검토
- IV. 결론

## I. 서론

2023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이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과 보호에 있어서 특별법이 법적 근거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담당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앞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와 특혜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은 짧은 기간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장

\* 이하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행사의 발표 내용은 「중견기업연구」 제11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송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바뀌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분되는 각 기업의 형태는 해당되는 각종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최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법」을 통하여 각종 지원과 성장촉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중견기업법」의 제정의 논의와 상시화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견기업법」 제정 연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견기업법」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

### 2.1 중견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이른바 ‘9988형’ 경제구조라고 하는데, 한국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88%의 국가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2018년에 발표된 한국의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 총합은 6,778억 달러로 국내총생산 1조 5,308억 달러의 44.2%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분리되어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전체 산업기준 (1인이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체수 (개)	전체	6,643,756	6,893,706	7,295,451	7,723,867
	중소기업 (비중,%)	6,638,694 (99.9)	6,888,435 (99.9)	7,286,082 (99.9)	7,713,895 (99.9)
	기타 (비중,%)	5,062 (0.1)	5,271 (0.1)	9,369 (0.1)	9,972 (0.1)
종사자수 (명)	전체	20,591,641	21,076,582	21,935,003	22,865,491
	중소기업 (비중,%)	17,103,938 (83.1)	17,439,595 (82.7)	17,791,969 (81.1)	18,492,614 (80.9)
	대기업 (비중,%)	3,487,703 (16.9)	3,636,987 (17.3)	4,143,034 (18.9)	4,372,877 (19.1)

통계출처 : 중소기업기본통계1)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속에서 2022년 기준<sup>2)</sup>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576개사로 대기업 성장 등 432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528개 기업이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였다.<sup>3)</sup>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959.0조 원이며,<sup>4)</sup> 영업이익은 58.0조 원,<sup>5)</sup> 자산은 1,096.7조 원,<sup>6)</sup> 종사자 수는 158.7만 명<sup>7)</sup>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 2.2 「중견기업법」에 대한 입법 논의

### 2.2.1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

국회에서 「중견기업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입법화의 움직임이 추진된 것은 2005년 8월 26일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비록 실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국회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 된 2005년도는 매일경제신문사가 발간한 「회사연감 Data Base」에 등록된 총 64,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수는 984개사에 불과하였고, 이에 더해 종업원수 2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 56,851개사를 제외한 총 6천1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분류에서 이탈하는 업체가 제조업 6.3%(242개), 광업/건설업/운송업 5.1%(39개), 대형종합소매/호텔업 14.0%(33개), 통신업/운송관련 서비스업/영화·방송업 등 24.6%(71개), 도매및상품중개업/통신·방문판매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경우 무려 41.0%(289개)에 달하였는데 이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규모면이나 외견상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중견기업의 현실을 인정하되 대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률적, 제도적 제약을 받는 중견기업의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동시

1)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변경(종사자 → 매출액)

2) 2023. 12. 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연도별 기업 수(결산기준, 개) : ('19) 5,007 → ('20) 5,526 → ('21) 5,480 → ('22) 5,576

4) 연도별 매출액(결산기준, 조원) : ('19) 781.6 → ('20) 770.0 → ('21) 852.7 → ('22) 959.0

5) 연도별 영업이익(결산기준, 조원) : ('19) 39.6 → ('20) 37.1 → ('21) 53.2 → ('22) 58.0

6) 연도별 자산(결산기준, 조원) : ('19) 951.7 → ('20) 988.9 → ('21) 1,034.1 → ('22) 1,096.7

7) 연도별 종사자수(결산기준, 만명) : ('19) 148.6 → ('20) 157.8 → ('21) 159.4 → ('22) 158.7

8) 의안번호 : 172485,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해훈의원등 13인)

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하고 연구개발을 촉진·장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도 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중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의 정착을 민간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입법안은 총 7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중견기업자의 범위 설정(안 제3조), ②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시책을 수립 및 실시(안 제4조), ③ 중견기업시책을 총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견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안 제9조), ④ 중견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에게 보고(안 제13조), ⑤ 중견기업발전위원회는 매년 중견기업의 집단화·협동화 등을 위한 중견기업협동시책을 정하고 이를 고시(안 제15조), ⑥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기술 및 품질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공동기술개발연구개발에 협력(안 제17조), ⑦ 중견기업 중 원사업자로부터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목적물을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받아 이를 제조·가공·수리·공사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수탁사업자로 간주(안 제18조),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이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안 제20조), ⑨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이 공장설립을 할 경우 각종 부담금등을 감면(안 제21조), ⑩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22조), ⑪ 매년 중견기업시책의 추진실적과 중견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안 제24조), ⑫ 중견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안 제25조) 등이 있었다.

### 2.2.2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시사점

2005년은 위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다룬 법률이 없었으며, 중견기업만을 위한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로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하여 비로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와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법제화의 노력이 담겼다.

당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서부터 성장한 경우 3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치면<sup>9)</sup> 대기업으로 취급받게 되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대기업이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제약을

9) 2024. 8. 21.부터는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축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①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 ② 중견기업에 대하여 신규 지원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 ③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인 지원. 보호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장친화적인 기업지원정책과의 부조화 염려 등이 있었고 결국 상기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중견기업의 법적 지원과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2.3 「산업발전법」에서의 중견기업에 대한 논의 검토

### 2.3.1 「산업발전법」(개정)의 주요내용

2010년 9월 16일 「산업발전법」이 정부의 제출안으로 개정되었다. 정부제출안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추가적으로 5년간 중견기업에 조세·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중견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정의와 중견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과 활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이 필요하므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큰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성장,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동안 중견기업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적극적인 지원근거 조항이 없고 지원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 중견기업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sup>10)</sup>

10)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07호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은 삭제되고, 「산업발전법」 제2조에 중견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만 남겨놓게 되었다.<sup>11)</sup>

### 2.3.2 「산업발전법」(개정)의 시사점

2011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는데 우선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앞에서 살펴본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된 2005년에 시작되었는데 바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럼 별도의 입법 형식으로 중견기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발전법」에서 법적으로 중견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산업발전법」에서는 선언적 의미로만 정의되었고, 실질적으로 중견기업 개념이 정립되고 국가관리 대상이 된 것은 2014년 「중견기업법」의 제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당시 중견기업에 대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중견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추가적으로 5년간 중견기업에 조세·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중견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업발전법」에서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의 목적<sup>12)</sup>과 차이가 있고 적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닐 것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
- 11)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 12) 「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용범위에 있어서도 이 법의 여타 규정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2014년 「중견기업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2.4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한시법

### 2.4.1 「중견기업법」(개정)의 주요내용

2014년 1월 21일 「중견기업기본법안」(이강후 의원 대표 발의),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중견기업성장 촉진 특별법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의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중견기업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법률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여 이른바 한시법으로 성격을 부여하였다.

비록 10년간만 유효하다는 한시법적인 성격이지만 「중견기업법」의 제정은 2005년 중견기업에 대한 입법안이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약 10년 만에 독자적인 「중견기업법」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②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중견기업자에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제7조),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도 적용 및 지원이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8조), ⑦ 정부는 업종별 기술현황·전망 등 특수성을 감안한 업종별 중견기업시책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

---

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⑪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견기업정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하여금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⑬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⑭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2조), ⑮ 중견기업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두되,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함(제23조), ⑯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성장 장애요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⑰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⑱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정책의 수립·시행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⑲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⑳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등이 있다.

이후 「중견기업법」은 지금까지 총 7차의 개정이 있었다.<sup>13)</sup>

#### 2.4.2 「중견기업법」 제정의 시사점

「중견기업법」의 제정은 중견기업 정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으며, 「중견기업법」의 시행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

13) 제1차 개정(시행 2016. 8. 30.), 제2차 개정(시행 2017. 6. 3.), 제3차 개정(시행 2019. 6. 12.), 제4차 개정(시행 2019. 7. 9.), 제5차 개정(시행 2021. 9. 16.), 제6차 개정(시행 2023. 10. 19.), 제7차 개정(시행 2024. 5. 7.)

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에 주된 시사점이 있다.

### Ⅲ.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와 개선 방안

#### 3.1 「중견기업법」 상시화의 의의<sup>14)</sup>

「중견기업법」은 2014년 1월 제정되어 10년 한시법으로서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한시법을 선택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기업을 충분히 육성하고 기업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점까지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지출 합리화나 정책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sup>15)</sup> 그런데 「중견기업법」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의의가 재조명받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화 등을 토대로 「중견기업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sup>16)</sup> 관련해서 2022년 6월 법 상시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sup>17)</sup>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 법 상시화를 담은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sup>18)</sup> 이러한 일련 과정에서 위 개정안을 조정·통합한 대안이 마련되었고,<sup>19)</sup> 2023년 4월 「중견기업법」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시 10년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여 한시법<sup>20)</sup>으로 시작했던 「중견기업법」이 부칙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한시법에서 상시법<sup>21)</sup>으로 바뀐 것이다.

「중견기업법」은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14년 1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으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에 법률의 기간만료로 인한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만약 올해 7월에 「중견기업법」이 폐지되었다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특례 60여 개가 함께 폐지될 예정이었

14) 「중견기업법」 상시화의 의의와 관련해서 주요 논의는 권용수, “중견기업법 상시화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기업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23, 19-20면 참조.

15) 중견기업 정책을 일시적·집중적으로 추진해 일정 수준의 중견기업을 확보한 후에는 국가 재정 지출 최소화과 정책 효율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6) 「중견기업법」 폐지시 중견기업 정책추진 근거 부재, 중견기업 대상 특례 소멸, 타 법령 입법 공백 발생 등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며 중견기업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상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6면).

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4)(2022. 6. 9).

1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25)(2022. 11. 1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398)(2023. 3. 3).

1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0929)(2023. 3. 3).

20) 「중견기업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21)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다.

그런데 2023년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중견기업법」 제정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상시화가 된 것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한국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에,<sup>22)</sup> 이번 개정은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를 통하여 중견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튼튼한 기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상정하는 법의 존속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의 성장까지 시야에 둔 법으로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지원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시화의 의의와 당위성이 인정되었다. ① 중견기업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는 한편, 그 실질이 중소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예가 많고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경험하므로 지속적인 육성·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② 「중견기업법」의 폐지는 「중견기업법」의 중견기업 정의 규정을 준용하는 다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계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견기업의 의의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견기업 지원·육성을 포함한 법령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③ 「중견기업법」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정책과제에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한시법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sup>23)</sup> 등의 비판이 그동안 있었는데, 2023년 4월 「중견기업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다소 극복되게 되었다.

### 3.2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의 제정 검토<sup>24)</sup>

그동안 확인할 수 있는 국내 기업정책은 ‘중소기업-보호·지원, 대기업-규제’의 이분법에 따라 추진되어 온 면이 크며,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는 지금의 특별법 형태의 「중견기업법」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29개인데<sup>25)</sup> 반하여 「중견기업법」과 같이 중견기업을 위한 관계법령이 이제 한시법

22)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반영돼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이투데이,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5931>, 2023. 3. 30. 기사, 2024. 3. 5. 방문).

23) 권용수, 앞의 논문, 29면.

24) 이하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의 제정 검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김대홍,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중견기업 인사이트」 2023 Vol.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3, 43-44면에서 재인용.

25)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③ 규제자유특

의 지위를 벗어났고 중견기업의 개념을 인용한 법률도 중소기업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견기업법」의 제정 당시에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동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고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특별법으로 한 면이 있었다.<sup>26)</sup>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sup>27)</sup>

특히 기본법은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중견기업의 지원과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기본법의 형식으로 지금의 「중견기업법」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명으로는 ‘중견기업기본법’, ‘중견기업지원기본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3.3 특별법에서 진흥법으로의 제정 검토

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④ 기술보증기금법,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⑧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⑩ 소상공인기본법, ⑪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⑫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⑯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⑰ 중소기업기본법, 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⑲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⑳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㉑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㉒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㉓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㉖ 중소기업협동조합법, ㉗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㉙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6) 제321회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법률안소위원회)”, 국회사무처, 2013. 12. 16., 5-8면.

27) 기본법은 목적·기본이념·정의, 기본계획·시행계획·위원회, 정책의 주요 내용, 보칙·별칙·부칙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기본이념에는 기본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규정을 둔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규정을 두고,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는데 국제협력,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촉진, 자금지원, 실태조사, 법제·행정·재정상 조치, 검사·검정, 인증, 지정제도, 전담조직 등이 규정될 수 있다(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786-787면).

지금의 「중견기업법」은 2023년 4월 18일 일부개정으로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이른바 상시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 체계에서 특별법은 일반법 제정 이후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일반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목적으로 일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현행법 중에는 일반법에 대한 특례사항 없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원이나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sup>28)</sup>

물론 「중견기업법」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일반법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기에 이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란 제명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특정 기간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제정 당시부터 일정 기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시법으로 제정한 「중견기업법」의 연혁을 고려한다면 「중견기업법」은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중견기업법」의 개정으로 상시화되면서 「중견기업법」이 다소 특별법 성격이 완화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법」이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법」의 제정 취지까지도 고려한다면 「중견기업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진흥법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흥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업, 계층, 문화, 지역 등을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며, 법률 제명에 진흥, 조성, 육성, 촉진, 지원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sup>29)</sup>

진흥법의 형태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정책 대상이나 입법목적에 따라 지원 방법과 대상 선정 등 구체적 내용을 매우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기에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적절한 입법 형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관련 산업진흥법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새로이 관련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거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으로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데<sup>30)</sup> 이는 현재 우리 중견기업에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

28) 현행법 중에는 일반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특별법’이란 제명을 사용(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하거나, 내용상 특별법에 해당하지만 제명에 ‘특별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어, 제명으로 특별법 성격의 법률을 명확히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회 법제실, 앞의 책, 841면).

29) 국회 법제실, 앞의 책, 818면.

30)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규정에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특정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의 확인제도(기업의 확인·확인취소·증명서류

하는 현 「중견기업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별법 형태의 「중견기업법」을 다시 전부개정 한다면 진흥법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견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서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육성 및 진흥법」 등이 그 예라고 하겠다.<sup>31)</sup>

앞서 기본법의 형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나 중견기업을 적극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추가한다면 위와 같이 살펴본 진흥법의 형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한국경제는 고용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부가가치는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양극경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전체 기업수 대비 채 1%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기업비중과 비교해도 그렇다.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알려진 대만보다도 한국의 중견기업 비중은 낮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을 통하여 지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견기업법」의 존재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 「중견기업법」의 개정으로 「중견기업법」의 10년 기한이 있었던 특별법에서 상시화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중견기업이 가지는 의미와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하면 지금의 「중견기업법」에서 보호 및 지원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견기업법」이 지금과 같이 ‘특별법’의 형태로 머물지 말고 「중견기업법」의 전부개정을 고려하거나 ‘기본법’ 또는 ‘진흥법’의 형태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발급)를 규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받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예) “○○기업”이란 매출액, 자산총액, 근로자 수, 고용주의 특성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1) 국회 법제실, 앞의 책, 818면.

32) 이흥, 『국가경쟁력, 중견기업에서 답을 찾다』, 클라우드나인, 2019, 6면.

## 참고문헌

권용수, “중견기업법 상시화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기업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23년.

김대홍,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중견기업 인사이트」 2023 Vol.0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3년.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년.

이홍, 『국가경쟁력, 중견기업에서 답을 찾다』, 클라우드나인, 2019년.

2023. 3. 30. 이투데이,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2023. 12. 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제 2 주제

###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에 관한 국내 판결 동향

정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23<sup>th</sup>. Aug, 2024

2024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행사

#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에 관한 국내 판결 동향

 LAWDATA

정관영 변호사  
jkylife@gmail.com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에 관한 국내 판례 동향

## 목차

### I.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3.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Boeing 판결을 중심으로 본 이사의

감시의무

### III. 중견기업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IV. 결어

# 1.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1. 이사의 감시 의무

### ● 근거

- ❖ 상법상 '감시'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음
- ❖ 학설
  - 선관주의 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 이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보고요구권 (상법 제393조 제3항)
- ❖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74 판결 등)

→(다음 면 계속)

3

# 1.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1. 이사의 감시 의무

- “대표이사란 …(중략)…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 ● 이사의 종류

-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사외이사 등 비상근이사
- ※ 전자의 감시 의무가 후자보다 책임 범위도 넓고 정도도 깊음

4

# 1.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1.2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

- 대표이사 : 보다 엄격하고 폭넓은 감시의무
  - ❖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에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 68636 판결)

5

# 1.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1.2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

-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담당이사 : 회사의 조직과 직제에 따라 세분화·전문화된 업무를 담당 ⇒ 대표이사에 비해 조직과 직제에 따른 감시의무의 범위는 좁겠지만, 감시의무의 수준은 동등
  -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 60080 판결)

6

# 1.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1.3 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

-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도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처럼 일반적 회사업무에 대하여 감시의무를 부담
  - ❖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 그러나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숨기는 업무도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7

# 1.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2. 내부통제 시스템

- 주식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 ❖ 구축 및 운영 주체 : 상법상 '이사'
  - ❖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 / 대응 기반 마련
    - 잠재적 위험 식별 : 회사의 내·외부 환경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
    - 대응 기반 마련 : 회사의 사업 모델, 시장 환경, 법적 규제 등 고려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
  - ❖ 다만 이사 개인이 위와 같은 통제 활동을 혼자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요망
  - ❖ 결국 이사의 감시의무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그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시 개선 조치 시행으로 요약 가능

8

## II. 중요 판례 개관

###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철강제조·가공업체인 U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연도강판과 냉연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20억 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U스틸은 2015년 1월 D제강에 흡수합병 돼 해산됨. 2014년 4월 U스틸 주식을 취득한 A씨는 흡수합병으로 D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됨.
- A씨는 2014년 11월 U스틸 감사위원들에게 'U스틸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재임했던 이사들 중 회장 등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U스틸이 이를 거부.
- A씨는 2014년 12월 D제강 회장 등을 상대로 "D제강에 319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 (주주대표소송)

9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쟁점

- 피고들이 U스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U스틸의 직원들이 법령에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는지 여부
- 또는 다른 업무 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U스틸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

### ● 관련법령

#### 【상법】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원심 판단(서울고법 2016나2032030 판결)

-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가 그 법령위반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무해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 판결요지

-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원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12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 판결요지

-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3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 판결 결과

- U스틸은 위와 같이 높은 법적 위험(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평석(1)

-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 이사의 감시의무가 회사의 규모,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감시의무가 일률적이거나 고정적인 형태를 띠지 않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

∴ 중견기업의 이사는 주력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법령상 규제와 회사의 특성 및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감시 활동을 수행해야

15

## II. 중요 판례 개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 평석(2)

-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 중견기업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무분장이 전문화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이사마다 본인의 전문 분야 업무에 집중하고 전결 규정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형태) ⇒ 다른 이사의 업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움 ⇒ **중견기업 이사는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간과하기 쉬움**

∴ **특히 법적 위험이 높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16

## II. 중요 판례 개관

###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을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손해를 입음
- 대우건설 소액주주 병 등 원고들은 2014. 4. 10. 대우건설의 당시 감사위원 3명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제기 청구서를 보냄
- 그러나 대우건설이 그 소제기 청구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4. 5. 23. 위 담합행위 당시 갑 회사의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17

## II. 중요 판례 개관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 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 요지 및 평석(1)

-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중략)…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용한 준법감시 의무와 책임을 확장하여 인정

18

## II. 중요 판례 개관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 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 요지 및 평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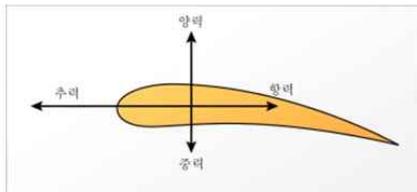
- “...**(전략)**...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이사는 ㉠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임무(mission critical)**이면서 ㉡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 ∴ 중견기업의 이사가 감시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수

19

## II. 중요 판례 개관

### 3.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Boeing 판결

- 보잉사가 제작한 737 MAX 비행기가 2018년 10월 29일과 2019년 3월 10일에 각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조사 결과 737 MAX는 모두 조종특성증강시스템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ugmentation System, MCAS)의 소프트웨어상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짐. “기수가 갑자기 내려가는 오류”
- 조종특성증강시스템은 비행기 꼬리를 위로 밀고 기수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양력을 조정하는 장치



출처 : 위키백과 '양력'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B%A0%A5>

20

## II. 중요 판례 개관

### 3.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Boeing 판결



21

## II. 중요 판례 개관

### 3.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Boeing 판결

- 보잉사는 기종 전환 교육내용에 MCAS에 관하여 조종사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조종사들은 MCAS에 대한 수십 내지 수백 시간의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조종에 임함(2시간 짜리 동영상 강의로 대체. 이마저 MCAS는 언급도 안 함)
- 조종사들이 MCAS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 사고들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보잉 737 MAX의 자국 내 이착륙을 금지하고, 보잉사는 막대한 재정적 손해와 더불어 평판에 타격을 입음
- 이에 보잉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이사와 임원들이 비행기 안전에 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에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22

## II. 중요 판례 개관

### • 피고 이사들의 주장

- 피고 이사들은 감시의무에 관한 리딩케이스인 Caremark판결이 제시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소 각하를 주장

\* Caremark 판결에 의하면 원고 주주는 제소 단계에서 다음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함

〈제1요건〉 이사들이 어떠한 보고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통제장치의 실행을 아예 빠뜨렸을 것(utterly failed)

〈제2요건〉 그런 시스템이나 통제장치를 실행했지만 이사들이 그 운용을 의도적으로 감시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여(consciously failed to monitor or oversee) 그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

23

## II. 중요 판례 개관

### • 원고들의 주장

- 피고 이사들(director defendants)은 ① 1차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보고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통제장치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제1요건은 충족되고, ② 1차 사고 후 2차 사고 이전 기간에도 제1요건이 충족될 뿐 아니라 설령 감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2요건이 충족된다.

### • ∴ 쟁점

- 델라웨어 주 회사법상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회사의 이사회에 제소 청구(demand requirement)를 해야 하나, 제소 청구가 “무익(demand futility)”한 경우 곧바로 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
- 이 사건 주주들은 법원에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보잉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

24

##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Boeing 판결

- 법원 판결 요지[No. CV 2019-0907-MTZ, 2021 WL 4059934 (Del. Ch. Sept. 7, 2021)]

- 피고 임원들(the "Officer Defendants")에 대한 소 : 각하
  - ❖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특정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피고 이사들(the "Director Defendants")에 대한 소 : 제소요건 충족  
→(다음 면 계속)

25

##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Boeing 판결

- 법원 판결 요지 [제1요건] : 충족

- 첫째, 다른 항공사와 달리 보잉의 이사회에는 항공기 안전을 감시할 책임을 맡은 위원회가 없었음. 감사위원회는 주로 재정적 위험을 다룸
- 둘째,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항공기 안전을 감시하거나 다루지 아니함
- 셋째, 이사회는 항공기 안전을 평가할 정식 절차 및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넷째, 경영진은 항공기 안전 관련하여 적신호 또는 최소한 황색 신호를 봤지만 해당 정보는 이사회에 도달하지 못함
- 다섯째, 피고 이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이사회에서 항공기 안전 문제가 다루지지 아니함 / 이사회가 사고 직후 항공기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허위의 언론 발표를 한 것은 피고 이사들이 항공기 안전에 관한 감시의무를 알면서도(with scienter) 위반한 것임

26

##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Boeing 판결

### • 법원 판결 요지 [제2요건] : 충족

- 피고 이사들의 주장처럼 보잉사에 감시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요청한 바 없고 항공기 안전 대신 언론 및 소송 대응에 집중하는 등 항공기 안전에 관한 적신호를 무시했으므로 제2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
- 특히 2018년 1차 사고 후 보잉사의 이사회는 기체결함 등 문제를 알았음에도 이에 대처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in bad faith) 행동하였다고 판시 (이사회는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연방항공국이 737 MAX의 운항을 정지한 뒤에야 비로소 항공기안전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음)

27

## III. 중견기업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 1. 중견기업 이사와 대기업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의 차이

-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직 구조를 가지므로 감시 의무의 실행이 비교적 덜 복잡할 수 있음(규모와 복잡성의 차이)
-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의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만큼 대기업에 비해 단순한 시스템만으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내부통제 시스템의 규모상의 차이)
- 대기업은 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사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에 따른 감시의무의 부담도 다를 수 있다(법적 위험 관리 수준의 차이).

28

### III. 중견기업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2. 중견기업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분업화, 전문화, 조직규모, 법적 위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사들이 주의해야 할 특유의 실재적인 상황들이 존재
  - ❖ 인적 자원의 제약 :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인적 자원이 제한적 ∴ 이사들 입장에서 임직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를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
  - ❖ 재무 자원의 제약 : 재무 자원 또한 제한적이므로 감시의무 수행을 위한 예산 관리와 비용 절감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어려움
  - ❖ 법률위험관리상의 제약 : 대기업만큼 법무 및 내부통제 담당 부서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사들은 관련 법규와 규제, 특히 업계 특유의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

29

### IV. 결어

#### 2. 중견기업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분업화, 전문화, 조직규모, 법적 위험에서 차이가 있음
  - ⇒ 때문에 중견기업 이사들이 주의해야 할 특유의 실재적인 상황들이 존재
- 중견기업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조직 구조로 인해 이사들이 직접 감시의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 내부적인 준법지원체계 강화 필요

30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에 관한 국내 판례 동향

**감사합니다.**

[jkylife@gmail.com](mailto:jkylife@gmail.com)

19F S-Tower 82 Saemunan-ro, Jongno-gu, Seoul, Korea (03185)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제 3주제

### 중견기업과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박준영 교수 (경상대학교)

2024년 (사)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대응

2024-08-23-금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박 준 영, 법학박사(경제법)

1

## I. 서론

2

##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규제대상

### ○ 공정거래법 목적조항 (제1조)

-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자단체 개념 (제2조 제1호, 제2호)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견기업 규제 태도

### ○ 최신 보도자료

- “공정위, 오픈마켓·광동제약 등 중견기업 정조준” (23.9.14. 뉴데일리경제)
- 한기정, “중견기업 내부거래 집중 조사” (23.9.14. 한국경제)
- “공정위, 대응제약 현장조사 착수 … 중견기업으로 대상 확대하나” (23.10.31. 쿠키뉴스)
- 실제 2023년 하반기에 다음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루어짐 (오픈마켓, 광동제약, 대응제약)
- [참고] 2024.3.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제재 (부당특약)

### ○ 중견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2019.3. 중견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첫 조사
- 2019.10.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규제 안 받는 자산 5조 미만 중견기업 감시 강화할 것”

4

## Ⅱ.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5

### 1. 개관

○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사전적 규제 :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지주회사 행위규제
  -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행위규제
- 사후적 규제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RPM,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
  -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각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 제47조 제1항)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논쟁

- (비판) 주로 회사법 영역에서의 비판이 많음. 기업지배구조론 등을 통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자의적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
- (반론)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이며,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

6

## 1. 개관

### ◦ 입법연혁

- 1980. 공정거래법 제정 및 시행
- 1986. 제1차 개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경제력 집중 억제 수단 도입
- 1992.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2009년 폐지)
- 1996.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신설 :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신설
- 2007., 2013. 부당지원행위 규정 개정 및 제23조의2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 신설
- 202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의해 조문 이동 :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6조

### ◦ (참고) 내부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금지규정 (논의의 소재)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 금지
- 법 제46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금지

7

## 2. 내부거래의 법개념

### ◦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개념

- 법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 :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 거래금액 100억 원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작년 시행령 개정에 의해 기준이 상향됨)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
- 법 제46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 참고 : 물량물아주기?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중 “규모성 지원행위”

8

### 3. 부당지원행위 금지요건

#### ○ 부당지원행위의 법원(法源)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령 제52조 관련 [별표 2], 공정위 예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 금지요건 및 쟁점

##### (1) 지원주체 : 사업자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매우 넓은 개념)

- (비판론)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2)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 (심사지침)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음)

- 법 제45조 제2항 : 지원객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 특수관계인(령 제14조) : 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 동일인 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9

##### (3) 지원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금 · 자산 · 인력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지원행위 인정

- 규모성 지원행위의 문제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의 문제점?

##### (4) 상당히 유리한 조건

-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의미하고, 지원성 거래에 따라서 경제상 이익제공행위에 따라 이전되는 경제상 이익이 상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의 산정이 필요 → “정상가격”의 산정!

- 지원금액 : (심사지침)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

- 정상가격 : (심사지침)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

10

(4) 상당히 유리한 조건 (계속)

- 정상가격 산정론 (심사지침) : 지원행위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음
- 상당성 요건 : 2013년 개정에 의해 종래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변경됨
- 해석론 : 무엇이 상당하여야 하는가? 지원금액이 상당한 경우?
-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 (판례)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5) 부당성 요건

- 공정거래저해성
  - 경쟁저해성 :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의 경쟁저해
  - 경제력 집중 :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유지·강화할 가능성
- (심사지침) 기본원칙 + 고려요소 +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11

### 3. 부당지원행위 금지요건 - 법리적 쟁점 검토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범위 설정 필요?
- 정상가격 관련 쟁점(박준영, 2016)
  - 가상적 가격인 정상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엄격 vs. 자의적
  - 나름의 산정방식을 심사지침에 마련하였지만, 그 방법론에 대한 논쟁 多
- 부당성 요건 관련 쟁점
  -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부당성 판단기준
  - 지원의도의 해석론? 정당화 사유 판단
  - 이익형량의 방법론? (이봉의, 2022)  
“금지과 허용을 좌우하는 선인 ‘부당성’은 경제적 합리성과 시장 또는 국민경제상 피해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을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사고와 법적 사고의 충돌을 조화로 이끌어야 할 임무를 갖게 된다.”

12

#### 4.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참고)

○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국내회사를 수범대상으로 함

○ 중견기업의 범위와의 관계?

- 중견기업 제외 요건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도 가능?

13

### Ⅲ. 규제사례 검토

14

## 1. 개설 - 공정위의 규제방향

- 대기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내외적인 감시 및 견제가 쉽지 않음
  - 대기업 집단의 경우 학계 등에서 관심이 높고 대외 공시 내용 등을 통한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지만, 중견 기업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외부 감시 및 자정 기능이 부족함
  - 공시, 정보 공개나 언론 관심 등을 통해 기업집단 대내외적으로 감시 및 견제가 활성화된 대기업집단에 비해 중견 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경제력 남용 및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음
- 대기업 집단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 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의 중견 기업 집단의 위법 행위를 확인·시정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중견 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등 불공정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이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이 낳는 폐해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음
  -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제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따라서 이들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가 초래하는 공정거래 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
- 비판적 검토
  - 공정위의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시각은 올바른 것인가?
  - 중견기업 부당지원행위 규제사례는 어떠한 것인가? 향후 정책적 제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15

## 2. 규제 사례 - (1) 창신 INC 사건 (2020)

- **지원주체** : 창신INC 및 창신그룹 해외계열사 3곳
- **지원객체** : 서흥 (창신그룹 비상장 계열회사)
- **지원행위** : 창신INC의 지시하에 창신그룹 해외 계열사 3곳이 서흥에 정상가격보다 7%p 높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
- **지원금액** : 약 2,600만 달러 (약 305억 원)

- **위반 법규정** :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시행령 별표 2 중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위법성 판단**
  - 서흥의 영업이익률, 자산규모, 이익잉여금 등 각종 재무지표의 급격한 개선 → 서흥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 등 경쟁상 지위가 크게 강화
  - 창신의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는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 발생
  - 서흥은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쟁상 효율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됨
-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85억 1,800만원), 고발(법인 창신INC)

16

## (2) KPX 사건 (2021)

- 지원주체 : 진양산업 (기업집단 KPX 계열회사)
  - 지원객체 : 씨케이엔터프라이즈 (기업집단 KPX 계열회사)
  - 지원행위 : 진양산업이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중 하나인 PPG의 수출 영업권을 계열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
  - 지원금액 : 총 36.77억 원
- 위반 법규정 :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시행령 별표 2 중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무체재산권 제공)
  - 위법성 판단
    -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아무런 노력 및 인적·물적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하여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유지
    - 수출업을 영위하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
  -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6.35억 원)

17

## (3) 고려제강 사건 (2021)

- 지원주체 : SYS홀딩스 (기업집단 고려제강 계열회사)
- 지원객체 : SYS리테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계열회사)
- 지원행위 :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요청을 받고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부동산 자산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함
  - 결과 : 스스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매우 부족하여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웠던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6,595억 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었음
- 지원금액 : 총 6,673.11억 원 (차입금 +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

18

### (3) 고려제강 사건 (2021)

- 위반 법규정 :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시행령 별표 2 중 부당한 자금지원
- 위법성 판단
  -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함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자금력 제고, 지점 수 및 상품 매입규모의 확대를 통한 판매능력 및 가격경쟁력 향상 (경쟁 여건 개선)
  - 지원행위를 통한 SYS리테일의 판매능력 제고 및 외형적 성장은 소형 대리점 등 중소기업자의 비중에 상당한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중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고, 특히 지방도시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발생시킴
-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68억 원)

19

### (4) 경동 사건 (2022)

- 지원주체 : 경동원 (기업집단 경동 계열회사)
- 지원객체 : 경동나비엔 (기업집단 경동 계열회사)
- 지원행위 :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하여 경동나비엔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09~'19)
  -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인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에서 결정
- 지원금액 : 50.53억 원

- 위반 법규정 :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시행령 별표 2 중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위법성 판단
  - 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관련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할 수 있었음
  -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를 중단/ 축소할 개연성 존재
  -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 발생 및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됨
-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8억 원)

20

### 3. 정리 및 비판적 검토

#### ◦ 평가

- 중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라 해서 금지요건 포섭 등에서 특별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음
- 피심인이 주장한 정당화 사유에 있어서도 중견기업 집단의 특징, 시장상황 등에 대한 고려는 없음

#### ◦ 문제의 제기

-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일률적인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타당한 것인가?
- 공정위의 일률적인 규제태도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는 타당한가?
- 중견기업 집단의 특징을 고려할 여지는 없는가?
-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는 무엇이 다른가?

21

## IV. 고민할 문제들

22

## 1.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범위 조정? 안전지대의 차별적 설정?

- (전제조건)
  -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고려를 위한 정당성을 발굴하여야 함
  - 대기업집단 vs. 중견기업집단
- 부당지원행위 규제대상을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하는 방안?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의 취지의 실현?
  - (cf)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 상향 흐름과의 정합성?
-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 확대? (박세환, 2024)
  -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의 안전지대 차별화 필요?
  -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상향 조정?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경우 거래총액 50억 원 내지 200억 원으로 기준이 더 높음)

23

## 2. 정당화 사유의 차별화

- 각 규제사례에서의 피심인의 정당화 사유
  - [창신 사건]
    - 국제조세상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매대행 수수료 인상
    - 정상가격 산정 방식 문제
  - [KPX 사건]
    - 사건 행위 포섭 오류, 처분시한 도과
    -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원의도가 없었음
  - [고려제강 사건]
    - 지원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 개별정상금리 산정 문제

24

## 2. 정당화 사유의 차별화 (계속)

### (2) 정당화 사유의 차별화

○ 각 규제사례에서의 피심인의 정당화 사유 (계속)

▪ [경동 사건]

- 정상가격 및 지원금액 산정 문제
-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관련
- 동일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우려 관련

### ○ 중견기업 집단 고유한 정당화 사유 발굴 필요

- 중견기업 집단 내부거래의 경제적 효율성?
- 안정적 거래처 확보 또는 거래비용의 감소 등
-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경쟁 이외의 고려요소?

25

## 3. 부당지원 규제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부당지원 규제 교육 필요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 금지요건 및 규제사례에 대한 숙지 필요

○ 컨설팅 사업 실시?

-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사업 존재
- 경제법 분야에 있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컨설팅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지원책으로 컨설팅 사업 등을 고안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할만함

26

## V. 결론 (생략)

27



Gajwa Campu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감사합니다.**

(jyp314@gnu.ac.kr)

28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제 4 주제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세

황헌순 교수 (계명대학교)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세

황헌순(계명대 세무학과 조교수)

## I. 시작하며

우리나라 경제시장은 과거에 비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경제주체도 다양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경제주체로서 떠올린다. 그 중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주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견기업에 대한 법제도로써,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중견기업에 대한 상시적 지원을 위해 2023년 중견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그 기간이 삭제됨으로써 중견기업법은 상시법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되는 실체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개인과 법인으로 양분되었던 경제주체가 이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세분화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중견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약 0.7%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다수의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규제가 시작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중소기업 형태로 남으려고 하게 될 텐데,<sup>1)</sup> 이러한 점이 중견기업의 비율이 낮은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중견기업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이 없는 것 이외에, 조세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에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개정한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sup>2)</sup> 기업이라는 것은 특정 세대가 영업을 개시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발전 및 고용유지 등을 고려하면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영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세대를 이어서 당해 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조세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업유지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적극적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과 같은 일종의 소극적 지원도 가능하다.

본 글에서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있어서 상속세를 어떻게 고민하여야 할 것인지 나름의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다고 언급되는 일본의 상속세 과세방식<sup>3)</sup>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관하며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권종호, “중견기업과 기업활력제고법 - 중견기업 지원법으로서 기업활력제고법의 가능성에 관한 모색 -”, 경제법연구 제18권 3호, 2019, 222면.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4\\_000284932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4_0002849324).  
3) 이에 대한 개관으로서, 황헌순, “일본 「상속세법」상 세대 간 자산이전에 따른 조세부담에 대한 규제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 참조.

## II. 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한 내용

### 1. 중견기업의 의의

#### (1)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나목),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다목)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정하고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는 형태가 아니라, 소거식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정책국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재검토하였다.<sup>4)</sup> 일본 정부는 2023년 11월 2일에 각의결정한 경제대책으로서 ‘지방·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 임금인상, 소득향상과 지방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중견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을 강구하는 안을 언급했으며, 임금인상, 지방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sup>5)</sup>

이에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기존 법령상 정의규정에 더해, 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경영의 고도화나 상권의 확대, 사업의 다각화와 같은 사업발전을 기대하며, 2000명을 초과하면 충분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정의규정의 외연을 ‘종업원수 2000명 이하’로 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이 종업원수 2000명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종업원수 2000명까지는 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이 비례한다는 점에서 경영력 향상계획의 인정대상으로서 중견규모의 사업

4) 구체적 내용은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について”, 2023년 11월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hin\\_kijiku/pdf/017\\_04\\_00.pdf](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hin_kijiku/pdf/017_04_00.pdf))[최종접속일:2024.0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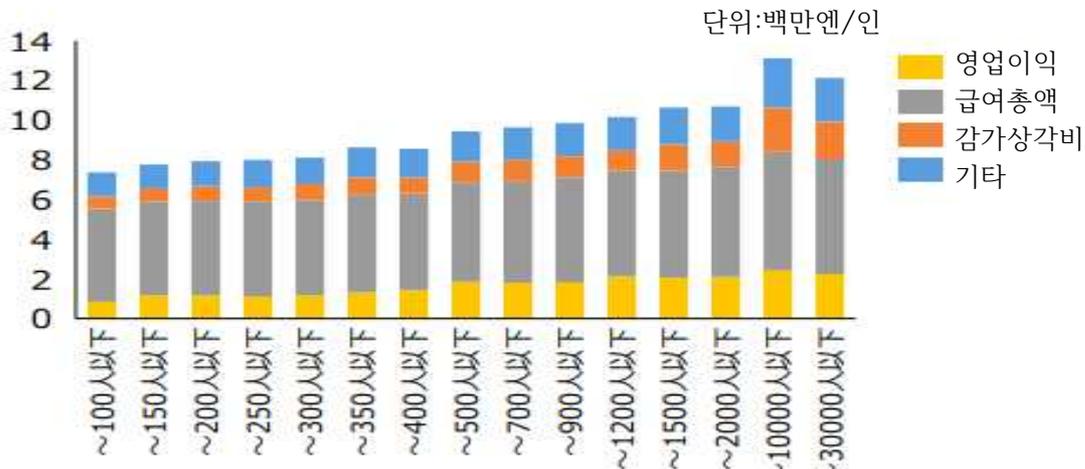
5) 内閣府, 「デフレ完全脱却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2023년 11월 2일閣議決定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3/20231102\\_taisaku.pdf](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3/20231102_taisaku.pdf))[최종접속일:2024.04.11.].

자도 포함하여 특정사업자 등(종업원수 2000명)으로 정의하여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sup>6)</sup>

나아가 성장을 향한 중견기업 특유의 과제를 바탕으로, 임금인상이나 성장투자 등에 특히 의욕적으로 대처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창설하고, 성장투자, M&A의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조치를 검토하고자 한다.<sup>7)</sup>

이에 종업원 2,000명 이하인 ‘중견기업’ 중에서도 특히 임금수준이 높고, 국내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을 ‘특정중견기업자’로 정의하고, 성장을 수반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대신이 인정한 경우에는 세제, 금융면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sup>8)</sup> 법률안에서는 제2조(정의) 제24항에서 ‘이 법률에서 「중견기업자」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2천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특정중견기업자는 제34조의2에서 언급되고 있다.<sup>9)</sup>

[그림 1] 종업원규모와 노동생산성



출처: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について”, 2023년 11월, 19면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필요하다면, 관련 통계조사 혹은 현황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법의 지위 및 위상에도 어울릴 것으로 생각된다.

## 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6)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について”, 2023년 11월, 19면.

7)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の見直し」について”, 2023년 11월, 15면.

8) <https://j-net21.smrj.go.jp/news/j84vtt00000089fl.html>.

9) <https://www.meti.go.jp/press/2023/02/20240216001/20240216001-d.pdf>

## (1) 유산과세방식과 유산취득과세방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유산과세방식, 일본은 ‘기본적으로’ 유산취득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부의 집중억제의 효과를 가진다고 언급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축적은 피상속인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기초한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도 크기 때문에, 상속을 계기로 유산세의 형태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축적 중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하는 동안 각종 세제상의 특혜, 조세회피 등에 의한 조세부담의 경감에 따른 것도 포함되며, 상속을 계기로 조세부담의 청산을 행하는 것도 유산과세방식의 근거로 된다고 한다.<sup>10)</sup>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산과세방식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의 집중억제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이해된다.

유산취득과세방식은 상속이라는 형태로 행해지는 유산의 우연한 이전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를 행함에 따라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행할 수 있으며, 취득자 단계에서의 부의 집중억제 효과도 있다고 한다. 유산과세방식과 유산취득과세방식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유산과세방식이 유산분할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행정 측면에서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11)</sup>

## (2) 일본의 상속세 과세방식과 현황

### 1) 과세방식의 연혁

일본의 상속세는 큰 틀에서 유산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과세방식으로 이행했다고 언급되며,<sup>12)</sup> 연혁적으로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05(明治38)년 상속세 제도가 마련되었다. 당초 이는 러일전쟁의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비상시 특별세였지만, 그것이 유산세 과세방식의 조세제도로서 정착되었다고 일컬어진다.<sup>13)</sup> 또한 상속법이 장자상속 혹은 호주상속이라 할 수 있는 상속제도(家督相續)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제도 유산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호주에게는 저율로 과세되는 등 가족관계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랐던 연혁이 있다.

둘째, 1947(昭和22)년에 장자상속을 폐지하는 세법의 개정이 행해졌으며, 증여세가 창

10) 田中二郎『租税法』(有斐閣・1968年)426頁.

11) 田中二郎『租税法』(有斐閣・1968年)426頁.

12) 田中二郎『租税法』(有斐閣・1968年)428頁.

13) 餅川正雄「日本における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研究」73頁.

설되어 증여자에게는 일생을 통한 '누적과세제도'가 마련되었다.

셋째, 1950(昭和25)년 샤우프권고<sup>14)</sup>에 기초하여 유산취득자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행하고, 또한 유산분할을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배제한다는 취지에서 유산취득과세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증여제도 상속세에 흡수되어 재산취득자의 일생을 통한 누적과세가 행해지게 되었다. 그 후 1953(昭和28)년에 세무집행 측면의 요청으로 인해 재산취득자의 일생을 통한 누적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상속 및 포괄유증만이 상속세의 대상으로 되고, 증여세 및 특정 유증은 수증자 과세의 증여세로 개정되었다.

넷째, 1958(昭和33)년 세법개정에서는 유산취득세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상속세 총액은 유산금액 및 법정상속인 수와 법정상속분이라는 객관적인 계수로 정하는 '법정상속분과세방식'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5)</sup>

일본은 기본적으로 유산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과세방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순수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라기 보다는 변형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sup>16)</sup> 다만, 그 내용을 볼 때, 유산과세방식의 변형인지 유산취득과세방식의 변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2) 현황

일본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때, 연혁상 다양한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종래 일본에서의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였다. 하지만, 2013(平成25)년에 상속세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개정이 있었다. 즉, 기초공제액을 5천만엔에서 3천만엔으로 낮추고, 동시에 법정상속인 1인당 1천만엔에서 6백만엔으로 공제액을 낮춤으로써 상속세의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즉, 상속세의 계산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이 인하되고, 세율은 인상되었다.

이는 2015(平成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15년의 과세상황을 보면 종전에는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자의 비율이 2014년에 4.4%정도였던 것이 기초공제액의 축소로 인해 8%로 상승했으며,<sup>17)</sup> 종래에는 상속재산이 6000만엔(약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는데, 이후 3600만엔을 넘으면 과세되는 구조로 되었다.<sup>18)</sup>

그 결과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중후반 ~ 2021년도 정도까지의 자료를

14) 샤우프권고란 1949(昭和24)년의 「샤우프사절단 일본세제보고서」(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the Shoup Mission, vol. 1~4)의 총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총사령부의 부름으로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샤우프(Carl Sumner Shoup)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샤우프사절단이 1949(昭和24)년 5월 일본에 왔는데, 이후 약 3개월 반에 걸쳐 일본 세제에 대해 조사·검토한 후 같은 해 9월 15일에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소위 샤우프권고라 한다. 또한 1950(昭和25)년 7월에 재차 일본에 와서 제2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1949(昭和24)년 보고서의 after care의 성격을 가졌으며, 이것도 포함하여 샤우프권고라 하는 경우도 많다(金子宏, 『租税法』(弘文堂·2019)59-60頁).

15) 田中二郎『租税法』(有斐閣·1968年)428頁.

16) 金子宏, 『租税法』(弘文堂·2022)691頁.

17) 일본 공익재단법인 생명보험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www.jili.or.jp/lifeplan/houseeconomy/succession/8.html>)참조[최종접속일 : 2021.6.21.].

18) 谷口勢津夫=高龍司=野一色直人=木山泰嗣, 전계각주(170), 196-197면.

보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인구는 약 8-9%정도로 언급된다.<sup>19)</sup> 다만, 이는 일본 전국을 고려한 것이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히려 일본의 세제개정은 우리나라가 현재 상속세 등의 개정을 하는 사회적 상황과 반대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3) 법정상속분과세제도

법정상속분과세제도는 1958(昭33)년 개정으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기초로서, 유산을 법정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했다고 가정(의제)하여 상속세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취득한 유산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의 상속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sup>20)</sup>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샤우프권고에 따른 상속세제에 따르면, 유산취득과세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산분할의 정도에 따라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1958년 당시 유산분할의 상황을 세무행정상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농업이나 중소기업의 재산과 같이 분할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무겁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산의 가장분할에 기초한 허위 신고가 행해졌다. 이에 위와 같은 가장분할을 실제로는 방지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은폐 혹은 가장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sup>21)</sup>

그 결과 법정상속분과세제도는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더라도 상속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하는 반면, 반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조세부담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산분할을 촉진할 수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결국 당초의 유산취득과세방식이 도모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에서의 특이한 제도로 이해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유산취득과세방식 하에서는 법정상속인 수가 많을 수록 세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1985년 전후에는 상속세 회피를 위해 양자를 두는 예가 빈번했다. 이에 1988년 개정으로 개별적 부인규정으로, 친자상속인(대습상속인 등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양자 중 1인만을 법정상속인 수에 포함(상속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친자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양자 중 2인까지만을 법정상속인 수에 포함할 수 있고(동항 제2호), 위의 어느 경우든지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제63조). 다만, 민법상 특별양자 또는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자녀 등은 친자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제15조제3항)하는 규정까지 마련되었다.

19) <https://www.jili.or.jp/lifeplan/houseeconomy/820.html>

20) 餅川正雄「日本における相続税の課税方式に関する研究」68頁.

21) 金子宏, 『租税法』(弘文堂・2022)712頁.

### 3.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법 내용

#### (1) 우리나라

##### 1) 상속세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50%<sup>22)</sup>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고율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개정안에도 언급이 된 바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제1호),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제2호),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2) 증여세

증여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있다. 동조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제1호), 부모가 20년 이상 30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제2호),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현황

우리나라에서 2016-2021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 건수는 95.7건, 총 공제액은 2,967억 원 정도였다.<sup>23)</sup> 생각건대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견기업만 본다면 그 수는 더욱 적을 것이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중견기업 수는 5,576개로 나와 있다.<sup>24)</sup>

[표 1] 중견기업 업력별 기업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업력별	기업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십억원)
합계	5,576	1,586,903	961,389
10년 미만	1,413	171,176	138,005
10년 ~ 20년 미만	1,489	290,441	179,034
20년 ~ 30년 미만	1,200	440,775	225,094
30년 ~ 40년 미만	702	264,527	150,870
40년 ~ 50년 미만	424	224,837	132,882
50년 이상	348	195,147	135,504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4217MBS\\_007&vw\\_cd=MT\\_ZTITLE&list\\_id=142\\_130\\_002\\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4217MBS_007&vw_cd=MT_ZTITLE&list_id=142_130_002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위 자료를 고려하면, 일단 현재 시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미만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기업의 운영과 유지 등을 고려한다면, 평균매출액 혹은 피상속인이 몇 년을 경영했는지 보다는 향후 상속인이 얼마나 운영을 해 갈 것인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과거 국내 중견기업 중 63.7%가 가업승계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72.2%)를 1위로 선택한 바 있다.<sup>25)</sup>

## (2) 일본

### 1) 경영승계원활화법과 사업승계세제

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708>. 독일의 경우 연 평균 1만건이 넘으며, 공제액은 약 23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4217MBS\\_007&vw\\_cd=MT\\_ZTITLE&list\\_id=142\\_130\\_002\\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5&tblId=DT_14217MBS_007&vw_cd=MT_ZTITLE&list_id=142_130_002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5) [http://brand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966.html](http://brand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966.html).

(i) 경영승계원활화법의 개관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사회적 상황이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승계원활화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이하 ‘경영승계원활화법’이라 한다)과 사업승계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sup>26)</sup>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주주는 경영자 본인인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개인 자산에 있어서도 자기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이에 후계자가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사업용자산에 대한 세부담 등에 의해 선대로부터 받게 되는 상속자산 등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sup>27)</sup> 이에 사업승계에 있어서 승계시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곤란함이나 승계후의 경영불안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경영승계원활화법이 제정된 것이며, 그 중 사업승계세제가 중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8년에 주된 개정이 행해진 후에 지금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

(ii) 사업승계세제

사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을 후계자에게 인계하는 절차이다. 사업승계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이나 자산의 승계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념이나 생각 등도 계승하게 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의 인품이나 수완이 기업 그 자체의 강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sup>28)</sup>

사업승계세제는 사업승계에 수반되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특례조치로서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증여세, 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 개인의 경우 개인의 사업용자산에 관한 증여세, 상속세의 납세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개정 전후의 큰 차이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29)</sup>

	특례조치(개정후)	일반조치(개정전)
사전 계획책정	5년 이내의 특례승계계획 제출	불요
적용기간	10년 이내의 증여, 상속 등 2018.1.1.~2027.12.31.	없음
대상주식	모든 주식	총주식수의 최대 3분의2까지
납세유예비율	100%	증여:100% 상속:80%
승계방식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인의 후계자	복수의 주주로부터 1인의 후계자

26) [https://www.chusho.meti.go.jp/zaimu/shoukei/shoukei\\_enkatsu/gaiyou.pdf](https://www.chusho.meti.go.jp/zaimu/shoukei/shoukei_enkatsu/gaiyou.pdf)

27) <https://fundbook.co.jp/column/understanding-ma/management-succession-method/>;  
<https://review.tanabeconsulting.co.jp/special/43219/>

28) <https://mscompass.ms-ins.com/business-news/business-succession/>;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jigyoshokei/houjin.htm>

29) <https://fundbook.co.jp/column/understanding-ma/management-succession-method/>

고용확보요건	탄력적	승계후 5년간, 평균 80%의 고용유지가 필요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면제	있음	없음
상속시정산과세의 적용	60세 이상의 자로부터 20세 이상의 자로의 증여	60세 이상의 자로부터 20세 이상의 추정상속인, 손자녀로의 증여

사업승계세제란 개괄적으로 보면, 회사의 후계자가 선대 경영자 등으로부터 자사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하고, 후계자(2대째)로부터 다음의 후계자(3대째)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 등의 경우에, 유예된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이다.<sup>30)</sup> 위의 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선대경영자로부터 후대경영자로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가 행해진 경우를 전제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선대경영자로부터 어느 시점에서인가 후대경영자에게 주식 등의 증여가 행해진다. 이때 후대경영자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다만, 이때 후대경영자가 취득한 것은 주식뿐이며, 현금은 받지 않는다. 이에 먼저 관련한 증여세(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후 3대째까지 이어지면 유예된 세액이 면제되는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2024년 3월까지 ‘특례승계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제출하고, 2027년 12월까지 승계를 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한 중요내용으로서 첫째, 위의 표에서 일반조치에서 ‘대상주식’과 ‘납세유예비율’이 있는데, 2/3 비율까지, 유예비율도 상속세의 경우 80%이므로, 양자를 곱하면, 최대 약 53%까지만 유예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특례조치로서 양자 모두 100%로 되어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한 상한이 폐지되어 전부 유예대상으로 된 것이다.

둘째, ‘승계방식’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선대경영자로부터 후대경영자로의 1대1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례조치에서는 선대경영자 이외에도 그의 배우자 혹은 종업원 등의 제3자인 주주로부터도 후대경영자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증자도 대표권을 가져야 하는 자이기는 하지만, 3명까지 대상으로 되었다. 이에 경영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승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고용요건과 관련하여 ‘고용요건의 근본적 재검토’가 언급된다.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조치에서는 승계후 5년간, 평균 80%의 고용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한 세액을 전액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후대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에 특례조치에서는 5년간 80% 고용요건을 유지 못하더라도 납세유예는 계속된다. 다만, 국가 경제에서 고용유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경영의 악화에 의한 때에는 인정경영혁신등 지원기구에 의한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이다. 위의 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유예가 계속

30) <https://www.tokyo-cci.or.jp/jigyoshoukeiportal/task/zeisei1/>

되는 것이다.

넷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조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승계시의 주가를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나 상속세가 계산되며, 이 금액이 유예된다. 이때 어떠한 유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승계 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주가가 하락한 때에 유예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락한 주가를 기초로 재계산하여 세액을 납부하도록 특례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당초 유예된 세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상승한 주가를 바탕으로 재계산하지는 않는다.

사업승계세제의 적용 후, 유예된 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서, ①후계자(2대)가 다음의 후계자(3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다음의 후계자(3대)가 사업승계세제를 적용받는 경우, ②후계자(2대)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위의 사유 이외에 회사의 주식을 양도, 증여하거나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시정산과세제도 부분에서 언급하는 역년증여제도를 이용하여 3대째에게 조금씩 증여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도 없다.

사업승계세제의 이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예된 세액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는 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의 단점으로서만 약 2대째에서 3대째로 사업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2대째가 운영하고 있던 기간동안의 이자를 세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으로써 유예된 세액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기업의 매각시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 상속시정산과세제도<sup>31)</sup>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그 연도의 역년과세에 따라 1.1.~12.31.까지 1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기초공제액 110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sup>32)</sup> 한편,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경우 2,500만엔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비과세라는 특징이 있다(상속세법 제21조의12).<sup>33)</sup> 이에 납세자가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증여액의 합계액이 2,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동법 제21조의13), 이후 상속시에 그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계한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이

31) 황헌순, “일본 「상속세법」상 세대 간 자산이전에 따른 조세부담에 대한 규제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 18-20면.

32)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402.htm>) 참조. 따라서 1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10만엔 이하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세의 신고도 불필요하다.

33) 이 2,500만엔은 한 번에 증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생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범위이므로, 1,000만엔씩 두 번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2,000만엔은 비과세범위 내에 속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있다면 이를 공제한다.<sup>34)</sup> 즉, 2,500만엔까지 증여세는 비과세로 하지만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의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나 손자녀에게 3,500만엔(논의의 편의상 100엔을 1000원으로 가정)을 증여한 경우, 3,500만엔(3억 5천만원)-2,500만엔(비과세범위 : 2억 5천만원)=1,000만엔(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2,500만엔을 초과하는 1,000만엔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만엔(2000만원)이 증여세의 납부세액으로 되는 것이다.

이후 상속시에는 증여액의 합계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위 사례에 따르면 2,500만엔이 상속재산에 가산),<sup>35)</sup> 증여액의 합계가 2,500만엔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지불한 경우 상속세로부터 지불한 증여세액은 차감되는 것이다(동법 제21조의 15).

세율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45~5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경우 2,500만엔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시에 증여세가 2,500만엔까지 비과세된다는 것이며, 추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납세자에게 있어서 절세방법이라기 보다는 단지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더욱 큰 제도인 것이다.

즉,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X1년도에 A가 자녀 B에게 1000만엔을 증여했다면, '1000만엔-110만엔'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X2년도에 110만엔을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된다. 한편, 납세자가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선택했다면, X1년도에 받은 1000만엔과 X2년도에 증여받은 110만엔도 2500만엔 비과세 부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증여라면 X2년도에 증여받은 110만엔은 비과세였겠지만, 상속시정산과세제도 하에서는 추후 상속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한번이라도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하면, 역년증여과세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역년증여의 비과세액인 110만엔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제한도 납세자에게 있어서는 해당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다.<sup>36)</sup>

2023년 세제개정으로 향후 상속시정산과세제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개정으로 인해 상속시정산과세제도 하에서도 매년 110만엔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110만엔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즉, 장래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 비과세로 한 110만엔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매년 110만엔은 비과세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00만엔을 증여받은 경우 연간 110만엔 비과세범위가 있으므로, 2500만엔 비과세범위에는 890만엔이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110만엔만 증여받은 경우 연간 비과세 110만엔이 있으므로, 2500만엔에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없다.

34)金子宏『租税法』(弘文堂・2019)710頁.

35) 상속재산과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시의 시가에 따른다(동법 제21조의16 제3항).

36) <https://www.zeirisi.co.jp/souzokuzei-keisan/taxation-system-for-settlement-at-time-of-inheritance/>.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위의 890만엔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다. 만약 증여자가 1억엔의 재산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르면 상속시에 9780만엔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는 위와 같은 비과세 부분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이 전부 상속시에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1억엔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엿보인다 할 수 있다.

### III. 마치면서

중견기업이 당연히 고용유지 등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적 책무와 국가경제에 대한 이바지는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물론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볼 때, 본 글에서는 먼저 향후 필요하다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방식을 보다 적극적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여러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는 종전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 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종전에는 연간 400건 정도였던 것이 특례조치 도입 후에는 연 6,000건 정도로 사업승계신청 건수가 증가했다.<sup>37)</sup> 일본의 사업승계세제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면, 조특법 등을 통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먼저 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 제도 혹은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혹은 완화는 국가 정책상 중요하며, 지금까지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그것이 산업 혹은 대상이라는 물적 측면을 중시하여 시행된 제도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이를 추진해 가는 인적 측면도 고려하여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최근 일본의 사회적 상황에서 깊이 살펴보아야 할 점은 노노상속(老老相續)이라고 생각된다. 즉, 과거에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를 누렸던 세대가 자산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후 세대로 이전하게 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할 수 있다. 이에 '상속정산시과세제도'와 같은 제도를 강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고령화됨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더욱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sup>38)</sup>

조특법 제30조의6과 관련해서도 향후 일본에서 언급되는 노노상속과 같은 부분을 고

37) <https://www.morimotokaikei.net/p8360/c0/i84495/>

38) 일본의 2023년 세제개정안에 따르면, 생전증여 합산과세 기간이 종래 3년이었던 것이 2024년 1월 1일부터 7년으로 연장되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려한다면, 60세 이상의 '부모'를 '직계존속'으로 하여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어려운 것은 현행 상증세법 제27조에서 '세대를 건너된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동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한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역시 현재와 같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마련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중견기업학회**

Korean Academ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